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연구윤리규정

2007년 6월 01일 제정
2016년 2월 28일 개정
2018년 2월 28일 개정
2018년 4월 18일 개정
2018년 9월 01일 개정

본 규정은 간호학자들의 연구수행, 결과물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뉘른베르그 윤리강령, 헬싱키 선언, 한국간호사윤리강령과 한국간호과학회 윤리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본 학회지의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정책은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PE, [http:// publicatio-nethics.org/](http://publicatio-nethics.org/))**가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는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윤리법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제2장 연구

제3조(연구수행)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2)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3)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4)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 5)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 6)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 7)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9)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4조(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5조(연구대상자)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 3)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 4)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 은폐나 기회 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 5)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함)
 - 2)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 3) 메타연구와 같이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 4) 기타 기관심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3.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6조(젠더의식) 연구결과 변수가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분석 결과를 제시 할 것을 권장한다.

제7조(연구비)

1.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3장 논문 심사와 출판

제8조(출판 윤리)

1. 저자의 책임과 의무

- 1)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2)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자격을 인정하고 저자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 3)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재정적·인적 이해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 4)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하여야 한다.
- 5) 연구대상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에 대상자의 이름, 이름의 머리글자, 병록번호, 사진, 가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느 형태로든 포함하지 않는다. 단, 과학정보로서 대상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 전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이때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출판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2. 저자결정 기준

- 1)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저자가 되려면 연구의 기획이나 자료의 획득·분석·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출판될 원고를 최종 승인해야 한다.
- 2)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3) 저자자격을 갖춘 연구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
-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통해 기여도를 표기할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1. 편집위원은 논문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 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논문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지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대상자 동의서 취득을 포함한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반드시 학술지 투고규정에 포함시키고, 게재 논문에도 정보에 입각한 대상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서면 동의 취득을 표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개별적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거나 혹은 보관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식별이 우려되는 경우 저자가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대신 동의서를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논문에 표시하도록 한다. 한편 대상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원 자료의 과학적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학술지는 사례발표를 포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할 때는 대상자(환자) 동의서와 관련한 규정을 투고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대상자 동의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게재하는 논문에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1.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 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4. 심사자는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5.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1. 편집인이나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2.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삼가야 한다.
 -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2) 심사 대상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행위
 -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4장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제12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1.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투고, 심사 또는 게재된 논문 중 제3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 및 출판과 관련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와 후속조치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2. 여성건강간호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윤리의 위반을 심의하여 판정한다.
만일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이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투고에서 심사중인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철회를 요청하고, 출판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논문을 취소 및 인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3. 편집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을 시에는 사안을 윤리위원회로 회부하고, 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을 심의하여 판정한다.
4. 윤리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과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 의뢰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5.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2)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6) 논문저자에게 서면 경고
 - 7) 논문저자의 회원자격 정지
 - 8)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6. 연구 및 출판윤리 부정행위를 한 회원과 논문은 후속조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7.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세칙을 통해 윤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심의 절차, 후속조치 항목, 심의결과 처리과정을 명시하고, 해당 세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